

● 환경부령 제984호

환경부령제984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품의 종류 | | | 기준 | |
|----------|--------------------|-----------------------|---|-------|
| |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1. 단위 제품 | 가.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 | 제과류 |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 (decoration cake)는 35% 이하] | 2차 이내 |
| | | 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 나.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 |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 다.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 라.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 마.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 바.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사.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 35% 이하 | 2차 이내 | |

| | | | | |
|---------|---|--|--------|-------|
| | | 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2.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 25% 이하 | 2차 이내 |

별표 1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여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함.

<환경부 제공>